

작성 방법 記入方法

-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본창설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 ※ 本届出は、外国の名字を使う国籍取得者が、その名字を使用せず、新しい名字と本籍の創設を希望する場合、管轄家庭裁判所で名字・本籍の創設許可決定を受けた後、その許可決定書謄本を添付の上、名字・本籍の創設許可決定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1ヶ月以内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창설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 ④欄 : 家族関係登録簿に正確に記録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書いてください。
: 創設前の名字や本籍が漢字またはハングルではない場合、本来の文字を記入。
- ⑤란 :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창설 후(개명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⑤欄 : 本人が届出する場合、創設後(改名後)の氏名を書いてください。届出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出生年月日)を書いてください。
-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⑥欄 :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を届出人本人以外の人が提出する場合にのみ記入)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受付担当公務員が身分証明書を確認します]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 등본 1부.
 1. 国籍取得者の名字・本籍の創設許可決定謄本 1通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2.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本人が届出する場合 :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代理人)が届出する場合 :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 :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には、第2項の書類のほか、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他人の署名または押印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を提出、または虚偽届出によって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が記録された場合には、刑法によって5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ます。